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나209197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장지원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3가합57201 판결
변 론 종 결 2026. 4. 23.
판 결 선 고 2026. 5.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보드게임을 제조, 판매,



전시, 수입, 수출, 복제, 배포, 광고하거나 이를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¹⁾).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들까지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2.항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보충·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 18행의 '피고'를 '피고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4면 2, 4, 18행, 6면 13, 16, 17, 19, 20행의 각각 '피고 제품들', '피고 제품', '피고들 제품들'을 모두 '피고들 제품'으로 고쳐 쓴다.

2. 보충·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기한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원고 제품이 상품 형태를 모두 갖춘 날은 원심이 인정한 2010. 11.경보다 더 늦은 시점이므로 위 (자)목 단서 (1)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

1)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취지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기재하였으나,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하하였다.



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는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037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589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단순히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할 뿐, 자신이 원고 제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를 모두 갖춘 날이 언제인지를 전혀 특정하여 주장하고 있지 않은바,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만으로 2020. 11.경을 원고 제품의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 본 원심 판단에 원고가 주장하는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원고 제품의 상품 형태 완비를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 소장 접수일인 2023. 4. 7.을 기준으로 본다면 하더라도 당시 변론종결일(2026. 4. 23.)에는 이미 보호기간인 3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는 또한 원고 제품을 수년간 제조·판매하여 왔고 창작자로 널리 알려졌으며 특히 게임 매뉴얼과 박스 패키지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등록까지 하였으므로, 피고들이 피고들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제품은 박스 패키지 디자인에 해당하는 박스 포장, 게임 매뉴얼에 해당하는 규칙서 및 내용물(게임도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규칙서의 경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들 제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소장 및 갑 제2호증 참조), 박스 포장 및 내용물의 경우 원고 제품과 피고들 제품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밖의 원고 주장 사실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진

판사 송미경

판사 김광남